

접 수	국회민원지원 - (20 . .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 도입'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부  
 2. 청 원 서 /부. 끝.

2018년 3월 26일

## 청 원 인

성 명 : 전 용 성 (인) 외 568 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3  
 전화번호 : 02-740-8247 (휴대전화 : 010-2094-8247)

소 개 의 원 : 박 인 숙 (인) 외 인

의 장				
민원지원관	민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성명 : 전용성 (대한기초의학협의회 기초의학 의사국사시험 도입 TFT 위원장)
건명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 도입 건
소개년월일	2018. 3.

### 소개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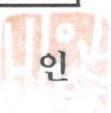
현행 의사국가시험은 진료역량을 평가할 뿐 의과학 역량 등 의사가 갖추어야 할 다른 역량은 평가하고 있지 않는 상황임.

이에 '대한기초의학협의회 기초의학 의사국사시험 도입 TFT의 의견과 같이 진료역량이외에도 의사가 갖추어야 할 다른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의과학 역량, 인사문사회 역량 등을 포함하는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 도입 청원을 소개함.

- - 끝 - -

소 개 의 원

박 인 숙



## 청원서

제목: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 도입

취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사의 배출이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우수한 의사배출을 위해 의사국가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 의사국가시험은 진료역량을 평가할 뿐 의과학역량 등 의사가 갖추어야 할 다른 역량은 평가하고 않고 있다. 의과학역량 등이 결여된 진료역량은 단순 임상진료기술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역량만 갖춘 의사를 우수한 의사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의사국가시험에 진료역량이외에도 의사가 갖추어야 할 다른 역량을 평가하는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을 도입하도록 의사국가시험을 개선함으로써 우수한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

내용:

국가가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인 일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의사가 우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의사를 배출하기 위하여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과대학으로 칭함)의 교육을 평가 인증하는 제도와 의과대학 졸업생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는 의사국가시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사국가시험은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여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의사국가시험은 의사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역량 중에서 진료역량만을 주로 평가하고 의과학역량 등 의사가 갖추어야 할 다른 다양한 역량은 사실상 평가하지 않음으로써 우수한 의사를 배출하려는 의사국가시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의과대학 학생이 의사가 되기 위하여 공부하여 획득해야 하는 졸업역량에는 임상의학 역량뿐만 아니라 기초의학, 행동 및 사회과학, 의학윤리, 평생교육 습득 능력 등의 역량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졸업역량은 세

계의학교육연합회(WFME)에서 제정한 의학교육국제표준, 즉 Basic Medical Education WFME Global Standards for Quality Improvement에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 표준은 전 세계 의과대학에서 교육해야 할 의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의학교육평가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도 이 국제표준을 반영한 새로운 인증기준을 사용하여 의학교육평가인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모든 의과대학이 참여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는 “기본의학교육 학습성과: 진료역량 중심”뿐만 아니라 “기본의학교육 학습성과: 과학적 개념과 원리 중심” 그리고 “기본의학교육 학습성과: 사람과 사회중심”을 출간하여,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의과대학에서 교육해야 할 다양한 학습성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의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의사국가시험에서 의사가 갖추어야 할 이러한 역량을 모두 평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시행하는 의사국가시험은 진료역량 평가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고, 의과대학에서 적절한 기초의학 교육을 통하여 의사가 갖추어야 할 의과학역량 등 다양한 기본 역량은 평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의사국가고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의학 교육에서 획득해야 할 역량을 평가하는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의 조속한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의사국가시험의 지금과 같이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을 도입하지 않고 진료역량 평가만 지속하게 되면, 의과대학에서 기초의학 교육의 부실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는 의과학역량 등 우수한 의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이 결여된 단순 임상진료기술만 갖춘 의사를 배출하게 될 것이다. 의과학역량 평가가 사실상 배제된 현재와 같은 의사국가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의사 양성을 기대하는 것은 뿌리가 부실한 나무에서 좋은 과실을 기대하는 것과 같이 허황된 일이다. 우수한 의사를 배출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질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며, 미래 의료산업과 이에 관련된 4차산업혁명의 기반을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며, 우리나라 의사와 의료의 국제 신인도와 경쟁력이 하락하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

따라서 우리는 의사국가시험의 진료역량뿐만 아니라 의과학역량, 인문사회 역량 등 의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모두 평가하여 우수한 의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을 도입할 것을 청원하며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 요청사항

국회는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인 우수한 의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의사국가시험에서 진료역량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의과학역량 등 다양한 역량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의사시험을 도입하도록 감사하고, 이 시험을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촉구한다.

청원인 대표

성명: 전용성



주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내

대한기초의학협의회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 도입 TFT 위원장

전화: 02-740-8247, 010-2094-8247